|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1993년 12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통과, 1999년 12월 2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개정,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등 7부 법률의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8년 10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1절 설 립**  **제2절 조직기구**  **제3절 1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제4절 국유독자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주권양도**  **제4장 주식유한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1절 설 립**  **제2절 주주총회**  **제3절 이사회, 경리**  **제4절 감사회**  **제5절 상장회사의 조직기구에 대한 특별규정**  **제5장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발행 및 양도**  **제1절 주식 발행**  **제2절 주식 양도**  **제6장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의 자격과 의무**  **제7장 사 채**  **제8장 회사의 재무, 회계**  **제9장 회사의 합병, 분립, 증자, 감자**  **제10장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11장 외국회사의 분지기구**  **제12장 법률책임**  **제13장 부 칙**   1. **총 칙**   **제1조** 회사의 조직 및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회사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중국경내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제3조** 회사는 기업법인으로서 독립적 법인재산이 있으며 법인재산권을 향유한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그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 회사의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수익, 중대사항 의결 및 관리자 선택 등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회사가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 상업의식을 수호해야 하며, 신의성실하고 정부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설립조건에 부합될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 처리를 하며, 이 법이 규정한 설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법률, 행정법규가 비준수속을 거쳐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회사 등록전에 법에 따라 비준수속을 거쳐야 한다.  공중은 회사 등록기관으로부터 회사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회사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급일자가 바로 회사의 설립일자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액, 경영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등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회사 영업허가증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하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체 발급한다.  **제8조**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명칭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회사명칭에 주식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9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려면 이 법에서 규정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려면 이 법에서 규정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거나,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경우 회사의 변경전의 채권, 채무는 변경후의 회사가 승계한다.  **제10조** 회사는 그 주요 사무기구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제11조**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회사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회사정관은 회사, 주주,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12조** 회사의 경영범위는 회사정관에 규정하고 법에 의하여 등록한다. 회사는 정관을 수정하여 경영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사의 경영범위에 법률, 행정법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 집행이사 또는 경리가 담임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대표자를 변경 시에는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회사는 분공사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공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분공사는 법인자격을 갖지 못하며 그 민사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다. 자회사는 법인자격을 가지며 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15조** 회사는 기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그 투자기업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인으로 될 수 없다.  **제16조** 회사가 기타 기업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회사정관에 투자나 담보 총액 및 단일 투자 또는 담보금액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회사가 회사의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전항에서 규정한 실제 통제인의 지배를 받는 주주는 전항의 규정사항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해 표결은 회의에 출석한 기타 주주의 과반수 표결권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17조** 회사는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안전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회사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회사 종업원에 대한 직업교육과 직책훈련을 강화하여 종업원의 자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18조** 회사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회사는 회사의 노조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회사 노조는 종업원을 대표하여 종업원의 근로보수, 근무시간, 복지후생, 보험 및 노동안전위생 등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와 집단계약을 체결한다.  회사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대표대회나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회사가 체제개편을 하거나 경영 면의 중대한 문제를 검토, 결정하거나 또는 중요한 규정제도를 제정할 경우에는 회사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아울러 종업원대표대회를 통하거나 기타 형식을 통하여 종업원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해야 한다.  **제19조** 회사에는 중국공산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중국공산당 조직을 설치하고 당의 활동을 전개한다. 회사는 당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20조** 회사의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의 정관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권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되며, 회사 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해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주주가 회사 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도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상을 가져다 주었을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회사의 지배 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관련 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손상해서는 아니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회사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결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무효하다.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소집절차, 표결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의결내용이 회사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주는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민법원에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주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등록 변경을 완료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의결내용의 무효 또는 취소를 선고하며,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 변경의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1절 설 립**  **제23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함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주주의 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전체 주주가 출자를 승낙한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3.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4. 회사명칭이 있고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맞는 조직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5. 회사 주소가 있어야 한다.  **제24조** 유한책임회사는 50명 이하의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제25조**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는 하기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회사의 명칭과 주소  2. 회사의 경영범위  3. 회사의 등록자본금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5. 주주의 출자방식, 출자액 및 출자기간  6. 회사의 기구 및 그 구성방법, 직권, 의사규칙  7. 회사의 법정대표자  8. 주주회의가 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주주는 회사정관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26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한, 전체 주주가 출자를 승낙한 출자액이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을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현물, 지재권, 토지사용권 등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의법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산은 제외이다.  출자로 하는 비화폐 재산은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을 사정해야 하며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산정해서는 아니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가치평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주주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각자가 출자를 승낙한 출자액을 제때에 전액 납입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할 경우에는 설립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은행 계좌에 예금시켜야 하며, 비화폐의 재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수속을 해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을 어기고 납입해야 할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전액 납입해야 하는 동시에 이미 출자금을 완납한 주주에게 대하여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주주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를 전액 납입하기로 약속한 후에는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등록신청서, 회사정관 등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설립등록을 신청한다.  **제30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설립에 출자한 비화폐 재산의 실제가액이 회사정관에 규정된 가액보다 뚜렷하게 적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출자를 납입한 주주는 차액을 보완해야 하며, 회사 설립시의 기타 주주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31조**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자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회사명칭  2. 회사 등록일자  3. 회사 등록자본금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납입한 출자액 및 출자일자  5.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발급일자  출자증명서에는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다.  **제32조** 유한책임회사는 주주명부를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주주의 출자액  3. 출자증명서 번호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을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변경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33조** 주주는 회사정관, 주주회의 기록, 이사회의 결의, 감사회의 결의 및 재무회계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요구에 부당 목적이 있어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그 열람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주의 서면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사가 열람을 거절할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서 열람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주주는 실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 받는다.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할 경우 주주는 그 실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를 하는 우선권을 가진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 우선권을 약정하지 않은 상황은 제외이다.  **제35조**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금을 포탈해서는 아니된다.  **제2절 조직기구**  **제36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의는 전체 주주들로 구성하며 주주회의는 회사의 권력기구로서 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37조** 주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방침과 투자계획을 결정  2. 비 종업원 대표가 담임하는 이사, 감사를 선임, 경질하고 이사, 감사의 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  3. 이사회 보고를 심의 비준  4. 감사회 또는 감사의 보고를 심의비 준  5. 회사 연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 비준  6. 회사의 이익배당안과 결손 보완안을 심의 비준  7. 회사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결  8. 사채 발행을 의결  9. 회사의 합병과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에 대해 의결  10. 회사 정관을 개정  11.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직권.  주주가 전항에 나열될 사항을 서면 형식으로 일치하게 동의할 경우에는 주주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바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주주는 결정서류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38조** 주주회의 첫 회의는 지주지위를 차지한 주주가 소집 및 주최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39조** 주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뉜다.  정기회의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대에 소집해야 한다. 10분의 1 이상의 표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 소집을 제의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40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사회가 주주회의를 소집하고 이사장이 주재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주재한다. 부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가 1명 이사를 선출하여 주재하도록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이사가 주주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집행이사가 주주회의를 소집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회혹은 감사회를 두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소집 및 주재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분의 1이상의 표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스스로 소집 및 주재할 수 있다.  **제41조** 주주회의를 소집할 시는 회의를 소집하기 15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정관에 별도로 규정했거나 전체 주주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주주회의는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주주들이 이에 서명해야 한다.  **제42조** 주주회의에서 주주는 그 출자비율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한다. 단 회사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는 제외이다.  **제43조** 주주회의의 의사방식과 표결절차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회사 정관으로 규정한다.  주주회의가 회사정관, 등록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에 대하여 의결 시에는 반드시 3분의 2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 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를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원을 3명 내지 13명으로 한다. 단이 법 제50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둘 이상의 국유기업 또는 기타 둘 이상의 국유투자주체가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의이사회 구성원에는 회사종업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유한책임회사 이사회 구성원에는 회사의 종업원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 이사회의 종업원대표는 회사 종업원들이 종업원대표대회, 종업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의 민주선거를 거처 선출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두고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이사장, 부이사장의 선출방법은 회사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 이사의 임기는 회사정관에서 약정하되 매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재선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제때에 개선하지 않았거나 이사의 임기내 사직으로 이사회 구성원이 법정인수에 미달할 경우 개선을 거쳐 당선된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기존 이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제46조** 이사회는 주주회의에 책임지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회의를 소집하고 주주회의에 업무 보고  2. 주주회의 결의를 집행  3.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안을 결정  4. 회사의 연도재무예산, 결산 안을 제정  5. 회사의 이익배당, 결손 보완 안을 제정  6.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사채 발행 안을 제정  7. 회사의 합병과 분립, 회사형태의 변경, 해산 안을 작성  8. 회사내부 관리기구의 설치를 결정  9. 회사 경리의 선임, 해임 및 보수 관련 사항을 결정하며, 경리의 지명에 의하여 회사 부경리, 재무책임자의 선임, 해임 및 보수 관련 사항을 결정  10. 회사의 기본 관리제도를 제정  11.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직권.  **제47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 주재하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시는 이사장이 지정한 부이사장이 소집, 주재한다. 부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가 공동으로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제48조** 이사회의 의사방식과 의결절차는 이 법이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회사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는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이사들은 그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의 표결은 1인 1표제를 실시한다.  **제49조** 유한책임회사는 경리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경리는 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경영관리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관철  2. 회사의 연도 경영계획과 투자안을 조직실시  3. 회사의 내부관리기구 설치안을 작성  4. 회사의 기본 관리제도를 작성  5. 회사의 구체 규장제도를 제정  6. 회사의 부경리, 재무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을 제의  7. 이사회가 선임 또는 해임하는 인원 이외의 기타 책임 관리인원을 선임 또는 해임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의 정관에서 경리의 직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경리는 이사회 회의에 열석한다.  **제50조** 주주가 보다 적거나 규모가 보다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집행이사 1명을 두고 이사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이사는 회사 경리를 겸할 수 있다.  집행이사의 직권은 회사정관으로 규정한다.  **제51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보다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1～2명의 감사를 두고 감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감사회는 주주대표와 적당한 비율의 회사 종업원대표로 구성해야 하며, 그중 종업원대표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구체적 비율은 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회의 종업원대표는 회사 종업원들이 종업원대표대회, 종업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의 민주선거에 의하여 선임한다.  감사회는 주석 1명을 두며 전체 감사의 과반수에 의하여 선출된다. 감사회 주석은 감사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감사가 공동응로 추천한 1명 감사가 감사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제52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임기 만료 후 재선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감사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제때에 개선하지 않았거나 감사의 임기내 사직으로 감사회 구성원이 법정인수에 미달할 경우 개선을 통해 선임한 임사가 취임하기 전에 기존 감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감사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제53조**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은 회사의 감사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  2. 이사, 고급 관리인원의 회사 직무수행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법규, 회사정관 또는 주주회의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급 관리인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  3. 이사, 고급 관리인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손상하는 경우,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이사, 경리에게 요구  4. 임시 주주회의 소집을 제의, 이사회가 이 법에서 규정한 주주회의 소집직책을 이행하지 하니할 시에는 주주회의를 소집 및 주재  5. 주주회의에 제안 제출  6. 이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급 관리인원에 대한 소송 제기  7.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직권.  **제54조** 감사는 이사회의에 열석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를 두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비정상적 경영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사사무소 등을 초빙하여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55조** 감사회는 매년 최소 1회 소집하며, 감사의 제의에 따라 임시 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절차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회사 정관으로 규정한다.  감사회의 결의는 과반수 감사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감사회는 그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56조** 감사회, 감사회를 두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3절 1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장 제1절,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1인 유한책임회사라 함은 1명 자연인 주주 또는 1명 법인주주로 구성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제58조** 1명 자연인은 한 개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당해 1인 유한책임회사는 새로운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제59조**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등록 시 자연인 독자 또는 법인독자임을 밝히고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명기해야 한다.  **제60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주주가 제정한다.  **제61조** 1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회의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주주가 이 법 제37조 제1항에 나열한 결정을 지을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취해야 하며 아울러 주주가 서명한 후 회사에 비치해야 한다.  **제62조** 1인 유한책임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시에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이 자기 본인의 재산과 분리된 증명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제4절 국유독자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제64조**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장 제1절,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국유독자회사라 함은 국가가 단독 투자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본급 인민정부의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에 위임하여 출자인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제65조** 국유독자회사의 정관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하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는다.  **제66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주주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에 주주회의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하여 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회사의 합병, 분리, 해산, 자본의 증감, 사채의 발행 등 사항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결정한다. 그중,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파산 신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심사한 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지칭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67조**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 법 제46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회 구성원 중에는 회사 종업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위임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종업원대표는 회사 종업원대표대회에서 선임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두고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이사장, 부이사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이사회 구성원 중데서 지명한다.  **제68조** 국유독자회사는 경리를 두며 이사회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경리는 이 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 구성원이 경리를 겸임할 수 있다.  **제69조** 국유독자회사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의 책임자를 겸하지 못한다.  **제70조** 국유독자회사의 감사회 구성원은 5명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그중 종업원대표의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으로 규정한다.  감사회 구성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위임한다. 다만 감사회 구성원 중의 종업원대표는 회사 종업원대표대회에서 선임한다. 감사회 주석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감사회 구성원 중데서 지명한다.  감사회는 이 법 제53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직권과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주권양도**  **제71조** 유한책임회사 주주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주권을 상호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타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주는 그 주권 양도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타 주주가 서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되어도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주주가 과반수 이상으로 양도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아니한 주주는 당해 주권을 매입해야 하며,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의 동의를 얻고 양도하는 주권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기타 주주가 우선 매입권을 가진다. 2인 이상의 주주가 우선 매입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협상을 거쳐 각자의 매입비율을 확정하며, 협상미결일 경우에는 양도 그 당시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 매입권을 행사한다.  회사정관에 주권양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72조** 인민법원이 법률이 규정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주주의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회사 및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 매입권을 가진다. 인민법원이 통지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어도 기타 주주가 우선 매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매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 이 법 제71조, 제72조에 따라 주권을 양도한 후 회사는 원(原) 주주의 출자증명서를 말소하고 신규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며 아울러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 중 주주 및 그 출자액 관련 기재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회사정관의 당해 조항에 대한 수정은 주주회의의 표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74조** 다음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주주회의의 당해 조항을 반대한 주주는 합리적 가격으로 그 주권을 매입하고자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1. 회사가 연속 5년간 이익을 취득한 동시에 이 법에서 규정한 이익 배당조건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연속 5년간 주주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합병, 분립하거나 또는 주요 재산을 양도할 경우  3.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주주회의에서 정관 개정으로 회사의 존속을 의결하였을 경우.  주주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주와 회사간에 주권 매입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주는 주주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5조** 자연인 주주가 사망되었을 경우 그 합법적 상속인은 주주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이다.   1. **주식유한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1절 설 립**  **제76조**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발기인 수가 법정 수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자본총액 혹은 사회에서 공모한 실수 주식자본총액이 있어야 한다.  3. 주식 발행, 기획 사항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발기인이 회사 정관을 제정하며, 공모방식으로 설립 시는 창립총회에서 채택해야 한다.  5. 회사명칭이 있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맞는 조직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6. 회사주소가 있어야 한다.  **제77조**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 또는 공모설립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발기설립이라 함은 발기인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설립이라 함은 발기인이 회사에서 발행할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기타 부분은 사회에서 공모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2명 이상, 200명 이하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중 과반수는 중국경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제79조**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은 회사설립 준비업무를 책임진다.  발기인은 발기인합의서를 체결하고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제80조** 발기인 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기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자본총액이다. 발기인이 그가 인수한 주식을 납입 완료하기 전에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지 못한다.  공모방식으로 설립한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기한 실수 주식자본총액이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주식유한회사 등록자본금의 실제 납부, 등록자본금의 최저액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1조** 주식유한회사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회사의 명칭과 주소  2. 회사의 경영범위  3. 회사의 설립방식  4. 회사의 주식 총수, 1주 금액 및 등록자본금  5.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인수한 주식 수, 출자방식 및 출자일자  6. 이사회의 구성, 직권 및 의사규칙  7. 회사의 법정대표자  8. 감사회의 구성, 직권 및 의사규칙  9. 회사의 이익 배당방법  10. 회사의 해산사유 및 청산방법  11. 회사의 통지, 공고 방법  12. 주주총회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82조** 발기인의 출자방식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3조** 발기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인은 서면으로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을 전부 인수해야 하며, 아울러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입해야 한다.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재산권의 이전수속을 밟아야 한다.  발기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발기인이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금을 인수하기로 한 후에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임해야 하며, 이사회는 회사등록기관에 회사정관 및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84조** 공모설립의 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인잉 인수하는 주식은 회사주식총수의 35%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5조** 발기인이 사회에서 주식을 공모 시에는 주식공모설명서를 공시하고 주식인수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식인수확인서에는 이 법 제86조에 나열한 사항을 기재하고 주식 인수자가 인수 주식수, 금액, 주소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주식 인수자는 그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수에 따라 주식자본을 납입한다.  **제86조** 주식공모설명서에는 발기인이 작성한 회사 정관을 첨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  2. 1주의 액면가치와 발행가격  3. 무기명주식의 발행 총수  4. 공모자금의 용도  5. 주식인수자의 권리와 의무  6. 당해 주식공모의 기한 및 규정 기한내 주식공모 수 미달 시 주식인수자가 공모를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  **제87조** 발기인이 사회에서 주식을 공모 시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증권회사가 위탁판매를담당하고 위탁판매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88조** 발기인이 사회에서 주식을 공모 시에는 은행과 주금 대리수취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주금 대리수취 은행은 계약서에 따라 주금을 수납, 보관하고 주금을 납입한 주식 인수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또한 유관부문에 수금증명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진다.  **제89조** 발행 주식의 주금을 완납한 후에는 법정검증기구의 자금사정을 받고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발기인은 주금이 완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창립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창립대회는 발기인, 주식인수자들로 구성한다.  주식공모설명서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발행한 주식을 전액 공모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발행한 주식의 주금이 완납된 후 발기인이 30일 이내에 창립대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 주식인수자는 납입한 주금과 은행의 동기 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발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 발기인은 창립대회를 소집하는 15일전에 회의일자를 주식인수자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창립대회는 주식총수의 과반수이상을 대표하는 발기인, 주식인수자가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창립대회는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 창립 준비상황에 관한 발기인의 보고를 심의  2. 회사 정관을 채택  3.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  4. 감사회 구성원을 선임  5. 회사 설립비용을 심사확인  6. 주금으로 충당한 발기인의 재산 가치를 심사확인  7.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경영요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설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  창립대회에서 상기 사항을 의결 시 회의에 출석한 주식인수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채택해야 한다.  **제91조** 발기인, 주식인수자가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주식자금으로 충당하는 출자를 납입한 후 규정기한에 주식을 전액 공모하지 못했거나 발기인이 규정한 기한에 창립대회를 소집하지 않았거나 또는 창립대회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금을 인출하지 못한다.  **제92조** 이사회는 창립대회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회사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 회사등록신청서  2. 창립대회의 회의록  3. 회사정관  4. 자금사정증명서  5. 법정대표자, 이사, 감사의 임직서류 및 신분증명  6. 발기인의 법인자격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  7. 회사 주소증명.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식을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등록기관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93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발기인이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전액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완 납입해야 하며, 기타 발기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설립에 출자한 비화폐 재산의 실제 가액이 회사정관에서 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당해 출자를 납입한 발기인은 그 차액을 보완해야 하며, 기타 발기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제94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하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 설립행위로 초래된 채무와 비용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2.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주식인수자가 납입한 주금과 그 은행의 동기 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연대책임을 진다.  3. 회사설립 과정에 발기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배상책임을 진다.  **제95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경우 환산한 실수 주금총액이 회사 정미자산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함에 있어서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제96조** 주식유한회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회사채권의 부본,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 감사회의 회의록, 재무회계보고서를 회사에 비치해야 한다.  **제97조** 주주는 회사정관, 회사명부, 사채 부본,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의 결의, 감사회의 결의, 재무회계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건의를 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제2절 주주총회**  **제98조** 주식유한회사 주주총회는 전체 주주들로 구성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기구로서 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99조** 이 법 제37조 제1항의 유한책임회사 주주회의 직권에 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주주총회에 적용한다.  **제100조**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이사의 수가 이 법의 규정수보다 적거나, 회사정관 규정수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  2. 회사의 미보완 결손이 실수 주식자본 총액의 3분의 1에 달할 경우  3.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회사주식의 10% 이상 소지한 주주가 요청한 경우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감사회가 소집할 것을 제의할 경우  6. 회사정관에 규정한 기타 상황.  **제101조** 주주총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장이 주재하며 이사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이사장 주재한다. 부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가 1명 이사를 공동으로 추천하여 주재하도록 한다.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회가 지체없이 소집 및 주재해야 하며, 감사회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 연속 90일 이상 단독 또는 공동으로 회사의 10% 이상 주식을 소지한 주주가 스스로 소집 및 주재할 수 있다.  **제102조** 주주총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는 20일 전에 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시 주주총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는 15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는 30일 전에 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회사의 3% 이상 주식을 소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회의를 소집하는 10일 전에 서면 임시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내에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당해 임시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임시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범위에 속하며 아울러 명확한 의제와 구체적인 의결사항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상기 두항의 통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무기명 주식소지자가 주주총회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는 5일 전부터 폐회하기 까지 주식을 주주총회에 공탁시켜야 한다.  **제103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그가 소지한 주식의 1주 1표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사가 소지한 주식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주주총회가 결의할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주주의 표결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가 회사정관을 개정하거나 등록자본금의 증감을 의결하거나 또는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형태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주주 표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제104조** 이 법과 회사정관에서 회사가 자산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외에 담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지체없이 주주총회 회의를 소집하여 주주총회 회의에서 상기 사항을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  **제105조** 주주총회가 이사,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회사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누계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누계 투표제라 함은 주주총회가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할 때 1주에 선임할 이사 또는 감사 수와 동등한 표결권이 있으며 주주는 그가 소유한 표결권을 집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 주주는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회사에 수권위임장을 제출하고 수권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107조** 주주총회는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주최인과 회의에 출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에 출석한 주주의 서명명부 및 대리출석 위임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3절 이사회, 경리**  **제108조**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은 5명 내지 19명으로 한다.  이사회 구성원에는 회사의 종업원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 이사회의 종업원대표는 회사의 종업원들이 종업원대표대회, 종업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의 민주선거를 통해서 선임한다.  이 법 제45조의 유한책임회사 이사 임기에 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 제46조의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직권에 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에도 적용한다.  **제109조**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두고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회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이사회의 결의 실시상황을 감독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협조하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이사장이 수행하며, 부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가 1명의 이사를 공동으로 선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10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2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매회 회의를 소집하는 10일전에 전체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10분의 1 이상 표결권을 대표한 주주 , 3분의 1 이상 이사 또는 감사회는 임시 이사회 회의 소집을 제의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사회의를 소집, 주재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소집 시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통지방식과 통지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1조** 이사회 회의는 과반수 이사가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1인 1표제를 실시한다.  **제112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사가 사정으로 이사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기타 이사에게 대신 출석하도록 서면으로 위탁할 수 있다. 위탁서에는 위임범위를 명기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이사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 주주총회의 결의를 위반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는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시에 이의를 표명했음이 증명되고 또 그 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13조** 주식유한회사는 경리를 두며 이사회가 초빙 또는 해임한다.  이 법 제49조의 유한책임회사 경리에 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경리에 적용한다.  **제114조** 회사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경리 겸직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제115조** 회사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  **제116조** 회사는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의 보수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4절 감사회**  **제117조** 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주주대표와 적당 비율의 회사종업원대표로 구성하며, 그중 종업원대표의 비율이 3분의 1 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구체적 비율은 회사정관으로 규정한다. 감사회 중의 종업원 대표는 회사종업원들이 종업원대표대회, 종업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의 민주선거를 통하여 선임한다.  감사회는 주석 1명을 두고 부주석을 둘 수 있다. 감사회 주석과 부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감사회 주석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사회 부주석이 감사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감사회 부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반수 감사가 공동으로 선출한 1명 감사가 감사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감사를 겸임하지 못한다.  이 법 제52조의 유한책임회사 감사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감사에게도 적용된다.  **제118조** 이 법 제53조, 제54조의 유한책임회사 감사회의 직권에 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감사회에도 적용된다.  감사회의 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19조** 감사회는 매 6개월에 최저 1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감사는 임시 감사회 회의 소집을 제의할 수 있다.  감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절차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감사회의 결의는 과반수 감사로 채택되어야 한다.  감사회는 의결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5절 상장회사의 조직기구에 대한 특별규정**  **제120조** 이 법에서 상장회사라 함은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거래되고 있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제121조** 상장회사가 1년 내에 중요한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아울러 회의에 출석한 주주 표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제122조**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두며 구체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23조** 상장회사는 이사회 비서를 두고 회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보관 및 회사의 주주자료 관리를 책임지고 정보 공개사무 등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제124조** 상장회사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관계되는 기업과 관련 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기타 이사의 표결권을 대리할 수도 없다. 당해 이사회 회의는 과반수의 관련 관계가 없는 이사의 출석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의결의는 관련 관계가 없는 이사의 과반수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사회 회의에 출석한 관련 관계가 없는 이사 수가 3인 미만일 경우 당해 사항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1.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발행 및 양도**   **제1절 주식 발행**  **제125조** 주식유한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며 1주의 금액은 동일하다.  회사의 주식은 주권의 형식을 취한다. 주권은 회사가 발급한, 주주가 주식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이다.  **제126조** 주식의 발행은 공평, 공정의 원칙에 의하며 동일 종류의 주식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동기에 발행한 동일 종류의 주식은 각 주의 발행조건과 가격이 같아야 한다.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 인수한 주식이든 각 주에 같은 가액이 지불되어야 한다.  **제127조** 주식의 발행가격은 액면금액대로 할 수도 있고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액면금액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128조** 주권은 지면형식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형식을 취한다.  주권에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회사명칭  2. 회사 설립일자  3. 주권의 종류, 액면금액 및 대표하는 주식의 총수  4. 주권의 번호  주권은 법정대표자가 서명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발기인의 주권에는 발기인의 주권이라는 문자표시가 있어야 한다.  **제129조**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주권일 수도 있고 무기명 주권일 수도 있다.  회사가 발기인, 법인에게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 주권이어야 하며 아울러 당해 발기인, 법인의 명칭 또는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별도로의 상호를 달거나 대표자의 성명으로 기명해서는 아니된다.  **제130조** 회사가 기명주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각 주주가 소지한 주식의 수  3. 각 주주가 소지한 주권의 번호  4. 각 주주의 주식 취득일자  무기명주권을 발행할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의 수, 번호 및 발행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제131조** 국무원은 회사가 이 법에 규정한 주권이외의 기타 종류의 주권을 발행하는데 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132조** 주식유한회사는 설립 후 즉시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는 설립 전에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할 수 없다.  **제133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1. 신주의 종류 및 액수  2. 신주의 발행가격  3. 신주 발행의 시말일자  4. 기존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 및 액수.  **제134조** 회사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고 신주를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신주 공모설명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공시하고 신주 인수확인서를 제작해야 한다.  이 법 제87조, 제88조의 규정은 회사의 신주 공개발행에 적용한다.  **제135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에 근거하여 그 가액 안을 확정할 수 있다.  **제136조**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금을 전액 공모한 후에는 회사등록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밟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2절 주식 양도**  **제137조** 주주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은 의법 양도할 수 있다.  **제138조**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의법 설립된 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139조** 기명주권은 주주가 배서방식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양도해야 하며, 양도한 후에는 회사가 양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기전의 20일 내에 또는 회사가 주식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전 5일 이내에는 전항에 규정한 주주명부의 등록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이 상장회사의 주주명부 등록변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40조** 무기명주권의 양도는 주주가 법에 의하여 주권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해 양도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1조** 발기인이 소지한 자기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 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회사가 주식을 공개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거래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그가 소지하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 및 변경상황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임기내에 매년 양도한 주식은 그가 소지하고 있는 본 회사 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가 소지하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회사 주식이 상장 거래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상기 인원은 이직후 반년내에 그가 소지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정관은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그가 소지하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기타 제한적인 규정을 지을수 있다.  **제142조** 회사는 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상황은 제외이다.  1. 회사 등록자본금의 감소  2. 회사의 주식을 소지한 기타 회사와 합병  3. 주식을 직원의 주식소지 계획 또는 회사 종업원에 대한 장려에 사용  4.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지은 회사 합병, 분립 결의에 이의가 있어 회사에서 본인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요구  5. 지권을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의 전환 가능한 사채로 전환  6. 상장회사가 회사의 가치 및 주주의 권익 보장에 필요.  회사가 전항 제1～2호의 규정으로 인해 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회사가 전항 3~5호, 6호의 규정으로 인해 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수권에 따라 3분제 2 이상 이사가 출석한 이사회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회사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후 제1호의 상황에 속할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말소를 해야 하며, 제2호, 제4호의 상황에 속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양도하거나 말소해야 하며, 제3호, 제5호, 제6호의 상황에 속할 경우 회사가 합쳐서 소지하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 수는 본 회사의 기발행 주식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아울러 3년 내에 양도를 하거나 말소를 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본 회사 주식을 인수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이 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서 규정한 상황으로 인해 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집중거래방식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회사는 자기 회사의 주권을 질권의 목적물로 인수할 수 없다.  **제143조** 기명주권을 도난당했거나 분실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주주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당해 주권의 실효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당해 주권의 실효를 선고한 후 주주는 회사에 주권의 추가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4조** 상장회사의 주권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증권거래소의 거래규칙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한다.  **제145조** 상장회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재무상황, 경영상황 및 중대한 소송을 공개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내 6개월에 1차의 재무회계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제6장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의 자격과 의무**  **제146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을 담임할수 없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을 받을 경우  2. 횡령, 뇌물제공, 재산점유, 재산유용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여 형벌을 받고 집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5년 이내인 자, 또는 범죄를 저질러 정치권리를 박탈받고 집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5년 이내인 경우  3. 파산청산 회사, 기업의 이사 또는 공장장, 경리를 담임하여 당해 회사, 기업의 파산에 개인적 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회사, 기업의 파산청산 완료 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4. 위법으로 인해 영업허가증이 말소되었거나 폐쇄 명을 받은 회사, 기업의 법정대표자를 담임한 동시에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된 자로서 당해 회사, 기업의 영업허가증이 말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5. 액수가 비교적 큰 개인의 채무가 만기되어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 위임했거나 고급 관리인원을 초빙하였을 경우 그 선임, 위임 또는 초빙은 무효하다.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임직기간에 이 조 제1항에 나열한 상황이 있을 경우 회사는 그의 직무를 해제해야 한다.  **제147조**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을 준수하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진다.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 또는 기타 불법수입을 수취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재산을 점유해서는 아니된다.  **제148조**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자금을 유용  2. 회사의 자금을 자기 개인의 명의로 또는 기타 개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예금  3.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회사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  4.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거래 진행  5.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무편리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회사에 속하는 상업기회를 도모하거나 그 임직 회사의 동일종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경영  6. 타인의 회사간 거래 커미션을 받고 착복  7. 회사의 상업비밀을 제멋대로 공개  8.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기타 행위.  이사, 고급 관리인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소득은 회사의 소유로 해야 한다.  **제149조**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회사의 직무를 수행 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50조**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가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회의에 열석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마땅히 열석하여 주주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의 직권 행사에 지장주지 말아야 한다.  **제151조** 이사, 고급 관리인원이 이 법 제149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에서 연속 180일 이상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회사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가 이 법 제149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전술한 주주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를 두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의 서면청구서를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정이 급하여 즉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이익에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조성할 수 있을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명의로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타인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는 앞 두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2조** 이사, 고급 관리인원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의 이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사 채**  **제153조** 이 법에서 사채라 함은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 발행하며 일정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회사가 사채를 발행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에서 규정한 발행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4조** 회사의 사채발행 신청이 국무원의 수권을 받은 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은 후에는 사채 공모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사채 공모방법에는 하기 주요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회사명칭  2. 채권 공모자금의 용도  3. 채권총액과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이율의 확정방식  5. 원리금 상환 기한과 방식  6. 채권 담보상황  7. 채권의 발행가격, 발행 시말일자  8. 회사의 순자산액  9. 아직 만기되지 않은 기발행 사채의 총액  10. 사채의 매출기구.  **제155조** 회사가 실물채권 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채권에 회사명칭, 채권의 액면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의 사항을 명기하고 법정대표자가 서명하고 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156조** 사채는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57조** 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채권원부를 비치해야 한다.  기명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채권소지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채권소지자가 채권을 취득한 일자 및 채권번호  3. 채권의 총액, 액면금액, 이율, 원리금 상환기한과 방식  4. 채권의 발행일자.  무기명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채원부에 채권총액, 이율, 상환기한과 방식, 발행일자 및 채권의 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제158조** 기명사채의 등기 결제기구는 채권 등기, 보관, 이자 지불, 원리금 상환 등 관련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159조** 사채는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가격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약정한다.  사채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소의 거류규칙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제160조** 기명사채는 채권소지자가 배서 방식으로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 후에서 회사가 양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한다.  무기명사채의 양도는 채권소지자가 그 채권을 양수인에게 교부시부터 즉시 양도 효력을 발생한다.  **제161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의하여 주권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환방법은 사채공모방법에서 규정한다. 상장 회사가 주권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주권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채권에 전환 가능 사채라는 문자표시가 있어야 하며 사채원부에 전환 가능한 사채의 액수를 명기해야 한다.  **제162조** 주권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를 발행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전환방법에 따라 채권소지자에게 주권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단 채권소지자는 전환 주권 또는 전환 불가 주권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제8장 회사의 재무, 회계**  **제163조** 회사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의 재무제도와 회계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164조** 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에 의하여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회계보고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165조**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정관이 정한 기한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를 각 주주에게 송달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재무회계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연차회의를 소집하는 20일 전에 본 회사에 비치하여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식을 공개 발행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재무회계보고서를 공고해야 한다.  **제166조** 회사가 당해 연도의 납세 후의 이윤을 배당할 경우에는 이윤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적립금으로 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누계로 회사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인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으로 전 연도의 결손을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당해 연도의 이윤으로 결손을 보완해야 한다.  회사는 납세후의 이윤에서 법정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납세후의 이윤에서 임의의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회사가 결손을 보완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납세후 이윤은, 유한책임회사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하되 주식유한회사 정관에 소지한 주식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상황은 제외이다.  주주회의,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결손 보완과 법정적립금 인출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하였을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을 위반하고 배당한 이윤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윤을 배당할 수 없다.  **제167조** 주식유한회사가 주권 액면금액보다 높은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취득한 할증금 및 국무원 재정부서가 자본적립금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기타 수입은 회사의 자본적립금에 계상해야 한다.  **제168조** 회사의 적립금은 회사의 결손을 보완하거나 회사의 생산경영 확대 또는 회사자본금의 증가에 사용한다. 단 자본적립금은 회사의 결손 보완에 사용할 수 없다.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보유해야 하는 당해 적립금은 전환전의 회사 등록자본금의 25%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69조** 회사가 회사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사무소를 고용, 해임할 경우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사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회계사사무소의 해임을 표결할 경우 회계사사무소의 의견 진술을 허용해야 한다.  **제170조** 회사는 고용한 회계사사무소에 진실하고 완벽한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 및 회계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을 거절하거나 은닉 또는 허위를 날조해서는 아니된다.  **제171조** 회사는 법정 회계장부 이외에 별도의 회계장부를 설정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개인의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회사의 자산을 예금할 수 없다.  **제9장 회사의 합병, 분립, 증자, 감자**  **제172조** 회사의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두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 하며 흡수되는 회사는 해산된다. 2개 이상의 회사가 병합되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 하며 합병되는 각측은 해산된다.  **제173조**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 각측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을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내에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회사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4조**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 각측의 채권, 채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해야 한다.  **제175조** 회사를 분립할 경우 그 재산은 상응하게 분할한다.  회사가 분립 시에는 대차대조표와 재산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을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176조** 회사의 분립전의 채무는 분립한 후의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회사가 분립 전에 채권자와 채무 변제에 관하여 달성한 서면합의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177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감소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차대조표 및 재산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자본금을 감소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45일 내에 회사에 채무을 상환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8조**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금 증자를 할 경우 주주가 신증 자본금의 출자를 납입함에 있어서는 본 법에 따라 설립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납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주식유한회사가 등록자본금 증자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유한회사의 주금 납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9조** 회사가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회사등록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하며, 회사가 해산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의 등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하며, 회사를 신설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의 설립등록을 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시에는 법에 따라 회사등록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0장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180조** 회사는 아래의 원인으로 해산된다.  1. 회사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사유가 나타났을 경우  2.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의결했을 경우  3. 회사가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할 경우  4. 영업허가증이 의법 말소 또는 취소되었거나 폐쇄 명을 받았을 경우  5. 인민법원이 이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시켰을 경우.  **제181조** 회사가 이 법 제180조 제1호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회사정관의 개정을 통해 존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장관을 개정할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3분의 2 이상 표결권을 가진 주주로 채택되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지한 표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제182조** 회사의 경영관리가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속하여도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소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타 루트를 거쳐도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의 전부 주주의 10% 이상 표결권을 소지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3조** 회사가 이 법 제180조 제1, 2호, 제4, 5호의 규정에 따라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나타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들로 구성하며 주식유한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산팀을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서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해 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아울러 지체없이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해야 한다.  **제184조** 청산팀은 청산기간에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산 정리 및 대차대조표와 재산리스트 작성  2.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3. 청산과 관계되는 회사의 미완료 업무의 처리  4. 체납 세금과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의 납부  5. 채권, 채무의 정리  6. 채무 상환 후의 회사의 잔여재산 처리  7.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활동에 참여.  **제185조** 청산팀은 구성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60일 내에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청산팀에 그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 시에는 채권의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기해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에 청산팀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  **제186조**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여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재산으로 청산비용과 종업원 임금, 노동보험료, 법정보상금을 지불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채무를 상환한 후의 잔여재산은,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청산기간에는 회사가 존속하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회사의 재산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하기 전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187조** 청산팀이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재산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청산팀은 청산업무를 인민법원에 이관해야 한다.  **제188조** 회사 청산이 완료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회사 등록기관에 보고하고 회사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회사의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  **제189조** 청산팀의 구성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청산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청산팀의 구성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이나 기타 불법 수입을 수취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재산을 점유해서는 아니된다.  청산임의 구성원이 고의로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90조** 회사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에는 기업파산 관련 법률에 따라 파산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11장 외국회사의 분지기구**  **제191조** 이 법에서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경외에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192조** 외국회사가 중국경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그 회사의 정관, 소속국가의 회사등록증서 등 관련 문서들을 제출해야 하며, 비준을 받은 후 법에 따라 회사등록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외국회사 분지기구의 심사비준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93조** 외국회사가 중국경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국경내에서 당해 지사를 책임질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아울러 당해 분지기구에 그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외국회사 분지기구의 경영자금에 대해 최저 한도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94조** 외국회사의 분지기구는 그 명칭에 당해 외국회사의 국적 및 책임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외국회사 분지기구는 본 기구에 모회사의 정관을 비치해야 한다.  **제195조** 외국회사가 중국경내에 설립한 분지기구는 중국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다.  외국회사는 그 분지기구가 중국경내에서 수행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96조** 비준을 받고 설립한 외국회사의 분지기구가 중국경내에서 업무활동에 종사 시에는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그 합법적 권익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7조** 외국회사가 중국경내의 분지기구를 철수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이 법의 회사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한다.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는 그 분지기구의 재산을 중국경외로 이전할 수 없다.  **제12장 법률 책임**  **제19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자본금을 허위 신고했거나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했거나 또는 기타 사기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등록을 사취하였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하도록 명하며, 등록자본금을 허위 신고한 회사에 대하여는 허위 신고한 등록자본금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했거나 기타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긴 회사에 대하여는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회사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199조** 회사의 발기인이나 주주가 허위 출자를 하고 출자 화폐 또는 비화폐 재산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규정한 기간대로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허위 출자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0조** 회사의 발기인이나 주주가 회사 설립 후 출자금을 포탈하였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포탈 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1조** 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정 회계장부 이외에 별도의 회계장부를 설정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2조** 회사가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에 제공한 재무회계보고서 등 자료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만하였을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3조** 회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서는 인출해야 할 금액을 전액 인출하도록 명하며 회사에 대해서는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4조** 회사가 합병, 분립, 등록자본금 감자 또는 청산 시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회사에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가 청산 시에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리스트에 허위적인 기재를 했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회사의 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회사에 은닉재산 또는 채무 상환 전에 분배한 회사재산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위안 이상 1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5조** 회사가 청산기간에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경고하고 불법 소득은 몰수한다.  **제206조** 청산팀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회사등록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출한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기만하였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그를 시정하도록 명한다.  청산팀의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했거나 불법 수입을 도모했거나 또는 회사의 재산을 점유하였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회사재산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7조** 자산 평가와 사정 또는 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당해 기구에 업무중지를 명하고 직접적 책임자의 자격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자산 평가와 사정 또는 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제공하였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 수입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그 기구에 업무중지를 명하며 직접적 책임자의 자격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자산 평가와 사정 또는 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제출한 평가결과, 자금사정 또는 검증증명의 부실로 회사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자신의 과오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부실 평가 또는 증명금액의 범위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제208조** 회사등록기관이 이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처리를 하였거나 이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209조** 회사등록기관의 상급부서가 회사등록기관에 이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신청을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이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법등록을 비호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210조**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 법적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분공사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분공사 명의를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시정하도록 명하거나 취체하며 아울러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1조** 회사를 설립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 지나도 개업하지 않거나 개업 후 스스로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그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회사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등록 변경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하며 기간이 지나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2조** 외국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중국경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하였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시정 또는 폐쇄를 하도록 명하며 아울러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3조** 회사의 명의를 빌어서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엄중한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214조** 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 그 재산으로 전액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제21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13장 부 칙**  **제216조** 이 법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1. 고급 관리인원이란 회사의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 및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을 말한다.  2. 지배 주주란 그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또는 그가 소지한 주식이 주식유한책임회사 주식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 그리고 출자액 또는 소지한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그 출자액 또는 소지한 주식의 표결권이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말한다.  3. 실제 통제인이란 회사의 주주가 아니지만 투자관계, 협의 또는 기타 설정을 통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관련 관계란 회사의 지배 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그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업과의 관계, 그리고 회사의 이익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관계를 말한다. 다만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간의 관계를 단지 국가의 공동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관련 관계로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제217조** 외국인투자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이 법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18조**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1993年12月29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通过；根据1999年12月25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三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04年8月28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决定》第二次修正；2005年10月27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八次会议修订；根据2013年12月28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等七部法律的决定》第三次修正；根据2018年10月26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决定》第四次修正）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有限责任公司的设立和组织机构**  **第一节　设　立**  **第二节　组织机构**  **第三节　一人有限责任公司的特别规定**  **第四节　国有独资公司的特别规定**  **第三章　有限责任公司的股权转让**  **第四章　股份有限公司的设立和组织机构**  **第一节　设　立**  **第二节　股东大会**  **第三节　董事会、经理**  **第四节　监事会**  **第五节　上市公司组织机构的特别规定**  **第五章　股份有限公司的股份发行和转让**  **第一节　股份发行**  **第二节　股份转让**  **第六章　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的资格和义务**  **第七章　公司债券**  **第八章　公司财务、会计**  **第九章　公司合并、分立、增资、减资**  **第十章　公司解散和清算**  **第十一章　外国公司的分支机构**  **第十二章　法律责任**  **第十三章　附　则**   1.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公司的组织和行为，保护公司、股东和债权人的合法权益，维护社会经济秩序，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公司是指依照本法在中国境内设立的有限责任公司和股份有限公司。  **第三条**　公司是企业法人，有独立的法人财产，享有法人财产权。公司以其全部财产对公司的债务承担责任。  　　有限责任公司的股东以其认缴的出资额为限对公司承担责任；股份有限公司的股东以其认购的股份为限对公司承担责任。  **第四条**　公司股东依法享有资产收益、参与重大决策和选择管理者等权利。  **第五条**　公司从事经营活动，必须遵守法律、行政法规，遵守社会公德、商业道德，诚实守信，接受政府和社会公众的监督，承担社会责任。  　　公司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不受侵犯。  **第六条**　设立公司，应当依法向公司登记机关申请设立登记。符合本法规定的设立条件的，由公司登记机关分别登记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不符合本法规定的设立条件的，不得登记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  　　法律、行政法规规定设立公司必须报经批准的，应当在公司登记前依法办理批准手续。  　　公众可以向公司登记机关申请查询公司登记事项，公司登记机关应当提供查询服务。  **第七条**　依法设立的公司，由公司登记机关发给公司营业执照。公司营业执照签发日期为公司成立日期。  　　公司营业执照应当载明公司的名称、住所、注册资本、经营范围、法定代表人姓名等事项。  　　公司营业执照记载的事项发生变更的，公司应当依法办理变更登记，由公司登记机关换发营业执照。  **第八条**　依照本法设立的有限责任公司，必须在公司名称中标明有限责任公司或者有限公司字样。  　　依照本法设立的股份有限公司，必须在公司名称中标明股份有限公司或者股份公司字样。  **第九条**　有限责任公司变更为股份有限公司，应当符合本法规定的股份有限公司的条件。股份有限公司变更为有限责任公司，应当符合本法规定的有限责任公司的条件。  　　有限责任公司变更为股份有限公司的，或者股份有限公司变更为有限责任公司的，公司变更前的债权、债务由变更后的公司承继。  **第十条**　公司以其主要办事机构所在地为住所。  **第十一条**　设立公司必须依法制定公司章程。公司章程对公司、股东、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具有约束力。  **第十二条**　公司的经营范围由公司章程规定，并依法登记。公司可以修改公司章程，改变经营范围，但是应当办理变更登记。  　　公司的经营范围中属于法律、行政法规规定须经批准的项目，应当依法经过批准。  **第十三条**　公司法定代表人依照公司章程的规定，由董事长、执行董事或者经理担任，并依法登记。公司法定代表人变更，应当办理变更登记。  **第十四条**　公司可以设立分公司。设立分公司，应当向公司登记机关申请登记，领取营业执照。分公司不具有法人资格，其民事责任由公司承担。  　　公司可以设立子公司，子公司具有法人资格，依法独立承担民事责任。  **第十五条**　公司可以向其他企业投资；但是，除法律另有规定外，不得成为对所投资企业的债务承担连带责任的出资人。  **第十六条**　公司向其他企业投资或者为他人提供担保，依照公司章程的规定，由董事会或者股东会、股东大会决议；公司章程对投资或者担保的总额及单项投资或者担保的数额有限额规定的，不得超过规定的限额。  　　公司为公司股东或者实际控制人提供担保的，必须经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  　　前款规定的股东或者受前款规定的实际控制人支配的股东，不得参加前款规定事项的表决。该项表决由出席会议的其他股东所持表决权的过半数通过。  **第十七条**　公司必须保护职工的合法权益，依法与职工签订劳动合同，参加社会保险，加强劳动保护，实现安全生产。  　　公司应当采用多种形式，加强公司职工的职业教育和岗位培训，提高职工素质。  **第十八条**　公司职工依照《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组织工会，开展工会活动，维护职工合法权益。公司应当为本公司工会提供必要的活动条件。公司工会代表职工就职工的劳动报酬、工作时间、福利、保险和劳动安全卫生等事项依法与公司签订集体合同。  　　公司依照宪法和有关法律的规定，通过职工代表大会或者其他形式，实行民主管理。  　　公司研究决定改制以及经营方面的重大问题、制定重要的规章制度时，应当听取公司工会的意见，并通过职工代表大会或者其他形式听取职工的意见和建议。  **第十九条**　在公司中，根据中国共产党章程的规定，设立中国共产党的组织，开展党的活动。公司应当为党组织的活动提供必要条件。  **第二十条**　公司股东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公司章程，依法行使股东权利，不得滥用股东权利损害公司或者其他股东的利益；不得滥用公司法人独立地位和股东有限责任损害公司债权人的利益。  　　公司股东滥用股东权利给公司或者其他股东造成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公司股东滥用公司法人独立地位和股东有限责任，逃避债务，严重损害公司债权人利益的，应当对公司债务承担连带责任。  **第二十一条**　公司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不得利用其关联关系损害公司利益。  违反前款规定，给公司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二十二条**　公司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的决议内容违反法律、行政法规的无效。  　　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的会议召集程序、表决方式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公司章程，或者决议内容违反公司章程的，股东可以自决议作出之日起六十日内，请求人民法院撤销。  　　股东依照前款规定提起诉讼的，人民法院可以应公司的请求，要求股东提供相应担保。  　　公司根据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决议已办理变更登记的，人民法院宣告该决议无效或者撤销该决议后，公司应当向公司登记机关申请撤销变更登记。   1. **有限责任公司的设立和组织机构**   **第一节　设　立**  **第二十三条**　设立有限责任公司，应当具备下列条件：  　　（一）股东符合法定人数；  　　（二）有符合公司章程规定的全体股东认缴的出资额；  　　（三）股东共同制定公司章程；  　　（四）有公司名称，建立符合有限责任公司要求的组织机构；  　　（五）有公司住所。  **第二十四条**　有限责任公司由五十个以下股东出资设立。  **第二十五条**　有限责任公司章程应当载明下列事项：  （一）公司名称和住所；  （二）公司经营范围；  （三）公司注册资本；  （四）股东的姓名或者名称；  （五）股东的出资方式、出资额和出资时间；  （六）公司的机构及其产生办法、职权、议事规则；  （七）公司法定代表人；  （八）股东会会议认为需要规定的其他事项。  股东应当在公司章程上签名、盖章。  **第二十六条**　有限责任公司的注册资本为在公司登记机关登记的全体股东认缴的出资额。  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决定对有限责任公司注册资本实缴、注册资本最低限额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二十七条**　股东可以用货币出资，也可以用实物、知识产权、土地使用权等可以用货币估价并可以依法转让的非货币财产作价出资；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不得作为出资的财产除外。  对作为出资的非货币财产应当评估作价，核实财产，不得高估或者低估作价。法律、行政法规对评估作价有规定的，从其规定。  **第二十八条**　股东应当按期足额缴纳公司章程中规定的各自所认缴的出资额。股东以货币出资的，应当将货币出资足额存入有限责任公司在银行开设的账户；以非货币财产出资的，应当依法办理其财产权的转移手续。  股东不按照前款规定缴纳出资的，除应当向公司足额缴纳外，还应当向已按期足额缴纳出资的股东承担违约责任。  **第二十九条**　股东认足公司章程规定的出资后，由全体股东指定的代表或者共同委托的代理人向公司登记机关报送公司登记申请书、公司章程等文件，申请设立登记。  **第三十条**　有限责任公司成立后，发现作为设立公司出资的非货币财产的实际价额显著低于公司章程所定价额的，应当由交付该出资的股东补足其差额；公司设立时的其他股东承担连带责任。  **第三十一条**　有限责任公司成立后，应当向股东签发出资证明书。  出资证明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公司名称；  （二）公司成立日期；  （三）公司注册资本；  （四）股东的姓名或者名称、缴纳的出资额和出资日期；  （五）出资证明书的编号和核发日期。  出资证明书由公司盖章。  **第三十二条**　有限责任公司应当置备股东名册，记载下列事项：  （一）股东的姓名或者名称及住所；  （二）股东的出资额；  （三）出资证明书编号。  记载于股东名册的股东，可以依股东名册主张行使股东权利。  公司应当将股东的姓名或者名称向公司登记机关登记；登记事项发生变更的，应当办理变更登记。未经登记或者变更登记的，不得对抗第三人。  **第三十三条**　股东有权查阅、复制公司章程、股东会会议记录、董事会会议决议、监事会会议决议和财务会计报告。  股东可以要求查阅公司会计账簿。股东要求查阅公司会计账簿的，应当向公司提出书面请求，说明目的。公司有合理根据认为股东查阅会计账簿有不正当目的，可能损害公司合法利益的，可以拒绝提供查阅，并应当自股东提出书面请求之日起十五日内书面答复股东并说明理由。公司拒绝提供查阅的，股东可以请求人民法院要求公司提供查阅。  **第三十四条**　股东按照实缴的出资比例分取红利；公司新增资本时，股东有权优先按照实缴的出资比例认缴出资。但是，全体股东约定不按照出资比例分取红利或者不按照出资比例优先认缴出资的除外。  **第三十五条**　公司成立后，股东不得抽逃出资。  **第二节　组织机构**  **第三十六条**　有限责任公司股东会由全体股东组成。股东会是公2司的权力机构，依照本法行使职权。  **第三十七条**　股东会行使下列职权：  （一）决定公司的经营方针和投资计划；  （二）选举和更换非由职工代表担任的董事、监事，决定有关董事、监事的报酬事项；  （三）审议批准董事会的报告；  （四）审议批准监事会或者监事的报告；  （五）审议批准公司的年度财务预算方案、决算方案；  （六）审议批准公司的利润分配方案和弥补亏损方案；  （七）对公司增加或者减少注册资本作出决议；  （八）对发行公司债券作出决议；  （九）对公司合并、分立、解散、清算或者变更公司形式作出决议；  （十）修改公司章程；  （十一）公司章程规定的其他职权。  对前款所列事项股东以书面形式一致表示同意的，可以不召开股东会会议，直接作出决定，并由全体股东在决定文件上签名、盖章。  **第三十八条**　首次股东会会议由出资最多的股东召集和主持，依照本法规定行使职权。  **第三十九条**　股东会会议分为定期会议和临时会议。  定期会议应当依照公司章程的规定按时召开。代表十分之一以上表决权的股东，三分之一以上的董事，监事会或者不设监事会的公司的监事提议召开临时会议的，应当召开临时会议。  **第四十条**　有限责任公司设立董事会的，股东会会议由董事会召集，董事长主持；董事长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副董事长主持；副董事长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半数以上董事共同推举一名董事主持。  有限责任公司不设董事会的，股东会会议由执行董事召集和主持。  董事会或者执行董事不能履行或者不履行召集股东会会议职责的，由监事会或者不设监事会的公司的监事召集和主持；监事会或者监事不召集和主持的，代表十分之一以上表决权的股东可以自行召集和主持。  **第四十一条**　召开股东会会议，应当于会议召开十五日前通知全体股东；但是，公司章程另有规定或者全体股东另有约定的除外。  股东会应当对所议事项的决定作成会议记录，出席会议的股东应当在会议记录上签名。  **第四十二条**　股东会会议由股东按照出资比例行使表决权；但是，公司章程另有规定的除外。  **第四十三条**　股东会的议事方式和表决程序，除本法有规定的外，由公司章程规定。  股东会会议作出修改公司章程、增加或者减少注册资本的决议，以及公司合并、分立、解散或者变更公司形式的决议，必须经代表三分之二以上表决权的股东通过。  **第四十四条**　有限责任公司设董事会，其成员为三人至十三人；但是，本法第五十条另有规定的除外。  两个以上的国有企业或者两个以上的其他国有投资主体投资设立的有限责任公司，其董事会成员中应当有公司职工代表；其他有限责任公司董事会成员中可以有公司职工代表。董事会中的职工代表由公司职工通过职工代表大会、职工大会或者其他形式民主选举产生。  董事会设董事长一人，可以设副董事长。董事长、副董事长的产生办法由公司章程规定。  **第四十五条**　董事任期由公司章程规定，但每届任期不得超过三年。董事任期届满，连选可以连任。  董事任期届满未及时改选，或者董事在任期内辞职导致董事会成员低于法定人数的，在改选出的董事就任前，原董事仍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公司章程的规定，履行董事职务。  **第四十六条**　董事会对股东会负责，行使下列职权：  （一）召集股东会会议，并向股东会报告工作；  （二）执行股东会的决议；  （三）决定公司的经营计划和投资方案；  （四）制订公司的年度财务预算方案、决算方案；  （五）制订公司的利润分配方案和弥补亏损方案；  （六）制订公司增加或者减少注册资本以及发行公司债券的方案；  （七）制订公司合并、分立、解散或者变更公司形式的方案；  （八）决定公司内部管理机构的设置；  （九）决定聘任或者解聘公司经理及其报酬事项，并根据经理的提名决定聘任或者解聘公司副经理、财务负责人及其报酬事项；  （十）制定公司的基本管理制度；  （十一）公司章程规定的其他职权。  **第四十七条**　董事会会议由董事长召集和主持；董事长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副董事长召集和主持；副董事长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半数以上董事共同推举一名董事召集和主持。  **第四十八条**　董事会的议事方式和表决程序，除本法有规定的外，由公司章程规定。  董事会应当对所议事项的决定作成会议记录，出席会议的董事应当在会议记录上签名。  董事会决议的表决，实行一人一票。  **第四十九条**　有限责任公司可以设经理，由董事会决定聘任或者解聘。经理对董事会负责，行使下列职权：  （一）主持公司的生产经营管理工作，组织实施董事会决议；  （二）组织实施公司年度经营计划和投资方案；  （三）拟订公司内部管理机构设置方案；  （四）拟订公司的基本管理制度；  （五）制定公司的具体规章；  （六）提请聘任或者解聘公司副经理、财务负责人；  （七）决定聘任或者解聘除应由董事会决定聘任或者解聘以外的负责管理人员；  （八）董事会授予的其他职权。  公司章程对经理职权另有规定的，从其规定。  经理列席董事会会议。  **第五十条**　股东人数较少或者规模较小的有限责任公司，可以设一名执行董事，不设董事会。执行董事可以兼任公司经理。  执行董事的职权由公司章程规定。  **第五十一条**　有限责任公司设监事会，其成员不得少于三人。股东人数较少或者规模较小的有限责任公司，可以设一至二名监事，不设监事会。  监事会应当包括股东代表和适当比例的公司职工代表，其中职工代表的比例不得低于三分之一，具体比例由公司章程规定。监事会中的职工代表由公司职工通过职工代表大会、职工大会或者其他形式民主选举产生。  监事会设主席一人，由全体监事过半数选举产生。监事会主席召集和主持监事会会议；监事会主席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半数以上监事共同推举一名监事召集和主持监事会会议。  董事、高级管理人员不得兼任监事。  **第五十二条**　监事的任期每届为三年。监事任期届满，连选可以连任。  监事任期届满未及时改选，或者监事在任期内辞职导致监事会成员低于法定人数的，在改选出的监事就任前，原监事仍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公司章程的规定，履行监事职务。  **第五十三条**　监事会、不设监事会的公司的监事行使下列职权：  （一）检查公司财务；  （二）对董事、高级管理人员执行公司职务的行为进行监督，对违反法律、行政法规、公司章程或者股东会决议的董事、高级管理人员提出罢免的建议；  （三）当董事、高级管理人员的行为损害公司的利益时，要求董事、高级管理人员予以纠正；  （四）提议召开临时股东会会议，在董事会不履行本法规定的召集和主持股东会会议职责时召集和主持股东会会议；  （五）向股东会会议提出提案；  （六）依照本法第一百五十一条的规定，对董事、高级管理人员提起诉讼；  （七）公司章程规定的其他职权。  **第五十四条**　监事可以列席董事会会议，并对董事会决议事项提出质询或者建议。  监事会、不设监事会的公司的监事发现公司经营情况异常，可以进行调查；必要时，可以聘请会计师事务所等协助其工作，费用由公司承担。  **第五十五条**　监事会每年度至少召开一次会议，监事可以提议召开临时监事会会议。  监事会的议事方式和表决程序，除本法有规定的外，由公司章程规定。  监事会决议应当经半数以上监事通过。  监事会应当对所议事项的决定作成会议记录，出席会议的监事应当在会议记录上签名。  **第五十六条**　监事会、不设监事会的公司的监事行使职权所必需的费用，由公司承担。  **第三节 一人有限责任公司的特别规定**  **第五十七条**　一人有限责任公司的设立和组织机构，适用本节规定；本节没有规定的，适用本章第一节、第二节的规定。  本法所称一人有限责任公司，是指只有一个自然人股东或者一个法人股东的有限责任公司。  **第五十八条**　一个自然人只能投资设立一个一人有限责任公司。该一人有限责任公司不能投资设立新的一人有限责任公司。  **第五十九条**　一人有限责任公司应当在公司登记中注明自然人独资或者法人独资，并在公司营业执照中载明。  **第六十条**　一人有限责任公司章程由股东制定。  **第六十一条**　一人有限责任公司不设股东会。股东作出本法第三十七条第一款所列决定时，应当采用书面形式，并由股东签名后置备于公司。  **第六十二条**　一人有限责任公司应当在每一会计年度终了时编制财务会计报告，并经会计师事务所审计。  **第六十三条**　一人有限责任公司的股东不能证明公司财产独立于股东自己的财产的，应当对公司债务承担连带责任。  **第四节　国有独资公司的特别规定**  **第六十四条**　国有独资公司的设立和组织机构，适用本节规定；本节没有规定的，适用本章第一节、第二节的规定。  本法所称国有独资公司，是指国家单独出资、由国务院或者地方人民政府授权本级人民政府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履行出资人职责的有限责任公司。  **第六十五条**　国有独资公司章程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制定，或者由董事会制订报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批准。  **第六十六条**　国有独资公司不设股东会，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行使股东会职权。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可以授权公司董事会行使股东会的部分职权，决定公司的重大事项，但公司的合并、分立、解散、增加或者减少注册资本和发行公司债券，必须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决定；其中，重要的国有独资公司合并、分立、解散、申请破产的，应当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审核后，报本级人民政府批准。  前款所称重要的国有独资公司，按照国务院的规定确定。  **第六十七条**　国有独资公司设董事会，依照本法第四十六条、第六十六条的规定行使职权。董事每届任期不得超过三年。董事会成员中应当有公司职工代表。  董事会成员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委派；但是，董事会成员中的职工代表由公司职工代表大会选举产生。  董事会设董事长一人，可以设副董事长。董事长、副董事长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从董事会成员中指定。  **第六十八条**　国有独资公司设经理，由董事会聘任或者解聘。经理依照本法第四十九条规定行使职权。  经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同意，董事会成员可以兼任经理。  **第六十九条**　国有独资公司的董事长、副董事长、董事、高级管理人员，未经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同意，不得在其他有限责任公司、股份有限公司或者其他经济组织兼职。  **第七十条**　国有独资公司监事会成员不得少于五人，其中职工代表的比例不得低于三分之一，具体比例由公司章程规定。  监事会成员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委派；但是，监事会成员中的职工代表由公司职工代表大会选举产生。监事会主席由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从监事会成员中指定。  监事会行使本法第五十三条第（一）项至第（三）项规定的职权和国务院规定的其他职权。  **第三章　有限责任公司的股权转让**  **第七十一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之间可以相互转让其全部或者部分股权。  股东向股东以外的人转让股权，应当经其他股东过半数同意。股东应就其股权转让事项书面通知其他股东征求同意，其他股东自接到书面通知之日起满三十日未答复的，视为同意转让。其他股东半数以上不同意转让的，不同意的股东应当购买该转让的股权；不购买的，视为同意转让。  经股东同意转让的股权，在同等条件下，其他股东有优先购买权。两个以上股东主张行使优先购买权的，协商确定各自的购买比例；协商不成的，按照转让时各自的出资比例行使优先购买权。  公司章程对股权转让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七十二条**　人民法院依照法律规定的强制执行程序转让股东的股权时，应当通知公司及全体股东，其他股东在同等条件下有优先购买权。其他股东自人民法院通知之日起满二十日不行使优先购买权的，视为放弃优先购买权。  **第七十三条**　依照本法第七十一条、第七十二条转让股权后，公司应当注销原股东的出资证明书，向新股东签发出资证明书，并相应修改公司章程和股东名册中有关股东及其出资额的记载。对公司章程的该项修改不需再由股东会表决。  **第七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对股东会该项决议投反对票的股东可以请求公司按照合理的价格收购其股权：  （一）公司连续五年不向股东分配利润，而公司该五年连续盈利，并且符合本法规定的分配利润条件的；  （二）公司合并、分立、转让主要财产的；  （三）公司章程规定的营业期限届满或者章程规定的其他解散事由出现，股东会会议通过决议修改章程使公司存续的。  自股东会会议决议通过之日起六十日内，股东与公司不能达成股权收购协议的，股东可以自股东会会议决议通过之日起九十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七十五条**　自然人股东死亡后，其合法继承人可以继承股东资格；但是，公司章程另有规定的除外。  **第四章　股份有限公司的设立和组织机构**  **第一节　设　立**  **第七十六条**　设立股份有限公司，应当具备下列条件：  （一）发起人符合法定人数；  （二）有符合公司章程规定的全体发起人认购的股本总额或者募集的实收股本总额；  （三）股份发行、筹办事项符合法律规定；  （四）发起人制订公司章程，采用募集方式设立的经创立大会通过；  （五）有公司名称，建立符合股份有限公司要求的组织机构；  （六）有公司住所。  **第七十七条**　股份有限公司的设立，可以采取发起设立或者募集设立的方式。  发起设立，是指由发起人认购公司应发行的全部股份而设立公司。  募集设立，是指由发起人认购公司应发行股份的一部分，其余股份向社会公开募集或者向特定对象募集而设立公司。  **第七十八条**　设立股份有限公司，应当有二人以上二百人以下为发起人，其中须有半数以上的发起人在中国境内有住所。  **第七十九条**　股份有限公司发起人承担公司筹办事务。  发起人应当签订发起人协议，明确各自在公司设立过程中的权利和义务。  **第八十条**　股份有限公司采取发起设立方式设立的，注册资本为在公司登记机关登记的全体发起人认购的股本总额。在发起人认购的股份缴足前，不得向他人募集股份。  股份有限公司采取募集方式设立的，注册资本为在公司登记机关登记的实收股本总额。  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决定对股份有限公司注册资本实缴、注册资本最低限额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八十一条**　股份有限公司章程应当载明下列事项：  （一）公司名称和住所；  （二）公司经营范围；  （三）公司设立方式；  （四）公司股份总数、每股金额和注册资本；  （五）发起人的姓名或者名称、认购的股份数、出资方式和出资时间；  （六）董事会的组成、职权和议事规则；  （七）公司法定代表人；  （八）监事会的组成、职权和议事规则；  （九）公司利润分配办法；  （十）公司的解散事由与清算办法；  （十一）公司的通知和公告办法；  （十二）股东大会会议认为需要规定的其他事项。  **第八十二条**　发起人的出资方式，适用本法第二十七条的规定。  **第八十三条**　以发起设立方式设立股份有限公司的，发起人应当书面认足公司章程规定其认购的股份，并按照公司章程规定缴纳出资。以非货币财产出资的，应当依法办理其财产权的转移手续。  发起人不依照前款规定缴纳出资的，应当按照发起人协议承担违约责任。  发起人认足公司章程规定的出资后，应当选举董事会和监事会，由董事会向公司登记机关报送公司章程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文件，申请设立登记。  **第八十四条**　以募集设立方式设立股份有限公司的，发起人认购的股份不得少于公司股份总数的百分之三十五；但是，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八十五条**　发起人向社会公开募集股份，必须公告招股说明书，并制作认股书。认股书应当载明本法第八十六条所列事项，由认股人填写认购股数、金额、住所，并签名、盖章。认股人按照所认购股数缴纳股款。  **第八十六条**　招股说明书应当附有发起人制订的公司章程，并载明下列事项：  （一）发起人认购的股份数；  （二）每股的票面金额和发行价格；  （三）无记名股票的发行总数；  （四）募集资金的用途；  （五）认股人的权利、义务；  （六）本次募股的起止期限及逾期未募足时认股人可以撤回所认股份的说明。  **第八十七条**　发起人向社会公开募集股份，应当由依法设立的证券公司承销，签订承销协议。  **第八十八条**　发起人向社会公开募集股份，应当同银行签订代收股款协议。  代收股款的银行应当按照协议代收和保存股款，向缴纳股款的认股人出具收款单据，并负有向有关部门出具收款证明的义务。  **第八十九条**　发行股份的股款缴足后，必须经依法设立的验资机构验资并出具证明。发起人应当自股款缴足之日起三十日内主持召开公司创立大会。创立大会由发起人、认股人组成。  发行的股份超过招股说明书规定的截止期限尚未募足的，或者发行股份的股款缴足后，发起人在三十日内未召开创立大会的，认股人可以按照所缴股款并加算银行同期存款利息，要求发起人返还。  **第九十条**　发起人应当在创立大会召开十五日前将会议日期通知各认股人或者予以公告。创立大会应有代表股份总数过半数的发起人、认股人出席，方可举行。  创立大会行使下列职权：  （一）审议发起人关于公司筹办情况的报告；  （二）通过公司章程；  （三）选举董事会成员；  （四）选举监事会成员；  （五）对公司的设立费用进行审核；  （六）对发起人用于抵作股款的财产的作价进行审核；  （七）发生不可抗力或者经营条件发生重大变化直接影响公司设立的，可以作出不设立公司的决议。  创立大会对前款所列事项作出决议，必须经出席会议的认股人所持表决权过半数通过。  **第九十一条**　发起人、认股人缴纳股款或者交付抵作股款的出资后，除未按期募足股份、发起人未按期召开创立大会或者创立大会决议不设立公司的情形外，不得抽回其股本。  **第九十二条**　董事会应于创立大会结束后三十日内，向公司登记机关报送下列文件，申请设立登记：  （一）公司登记申请书；  （二）创立大会的会议记录；  （三）公司章程；  （四）验资证明；  （五）法定代表人、董事、监事的任职文件及其身份证明；  （六）发起人的法人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  （七）公司住所证明。  以募集方式设立股份有限公司公开发行股票的，还应当向公司登记机关报送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核准文件。  **第九十三条**　股份有限公司成立后，发起人未按照公司章程的规定缴足出资的，应当补缴；其他发起人承担连带责任。  股份有限公司成立后，发现作为设立公司出资的非货币财产的实际价额显著低于公司章程所定价额的，应当由交付该出资的发起人补足其差额；其他发起人承担连带责任。  **第九十四条**　股份有限公司的发起人应当承担下列责任：  （一）公司不能成立时，对设立行为所产生的债务和费用负连带责任；  （二）公司不能成立时，对认股人已缴纳的股款，负返还股款并加算银行同期存款利息的连带责任；  （三）在公司设立过程中，由于发起人的过失致使公司利益受到损害的，应当对公司承担赔偿责任。  **第九十五条**　有限责任公司变更为股份有限公司时，折合的实收股本总额不得高于公司净资产额。有限责任公司变更为股份有限公司，为增加资本公开发行股份时，应当依法办理。  **第九十六条**　股份有限公司应当将公司章程、股东名册、公司债券存根、股东大会会议记录、董事会会议记录、监事会会议记录、财务会计报告置备于本公司。  **第九十七条**　股东有权查阅公司章程、股东名册、公司债券存根、股东大会会议记录、董事会会议决议、监事会会议决议、财务会计报告，对公司的经营提出建议或者质询。  **第二节　股东大会**  **第九十八条**　股份有限公司股东大会由全体股东组成。股东大会是公司的权力机构，依照本法行使职权。  **第九十九条**　本法第三十七条第一款关于有限责任公司股东会职权的规定，适用于股份有限公司股东大会。  **第一百条**　股东大会应当每年召开一次年会。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在两个月内召开临时股东大会：  （一）董事人数不足本法规定人数或者公司章程所定人数的三分之二时；  （二）公司未弥补的亏损达实收股本总额三分之一时；  （三）单独或者合计持有公司百分之十以上股份的股东请求时；  （四）董事会认为必要时；  （五）监事会提议召开时；  （六）公司章程规定的其他情形。  **第一百零一条**　股东大会会议由董事会召集，董事长主持；董事长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副董事长主持；副董事长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半数以上董事共同推举一名董事主持。  董事会不能履行或者不履行召集股东大会会议职责的，监事会应当及时召集和主持；监事会不召集和主持的，连续九十日以上单独或者合计持有公司百分之十以上股份的股东可以自行召集和主持。  **第一百零二条**　召开股东大会会议，应当将会议召开的时间、地点和审议的事项于会议召开二十日前通知各股东；临时股东大会应当于会议召开十五日前通知各股东；发行无记名股票的，应当于会议召开三十日前公告会议召开的时间、地点和审议事项。  单独或者合计持有公司百分之三以上股份的股东，可以在股东大会召开十日前提出临时提案并书面提交董事会；董事会应当在收到提案后二日内通知其他股东，并将该临时提案提交股东大会审议。临时提案的内容应当属于股东大会职权范围，并有明确议题和具体决议事项。  股东大会不得对前两款通知中未列明的事项作出决议。  无记名股票持有人出席股东大会会议的，应当于会议召开五日前至股东大会闭会时将股票交存于公司。  **第一百零三条**　股东出席股东大会会议，所持每一股份有一表决权。但是，公司持有的本公司股份没有表决权。  股东大会作出决议，必须经出席会议的股东所持表决权过半数通过。但是，股东大会作出修改公司章程、增加或者减少注册资本的决议，以及公司合并、分立、解散或者变更公司形式的决议，必须经出席会议的股东所持表决权的三分之二以上通过。  **第一百零四条**　本法和公司章程规定公司转让、受让重大资产或者对外提供担保等事项必须经股东大会作出决议的，董事会应当及时召集股东大会会议，由股东大会就上述事项进行表决。  **第一百零五条**　股东大会选举董事、监事，可以依照公司章程的规定或者股东大会的决议，实行累积投票制。  本法所称累积投票制，是指股东大会选举董事或者监事时，每一股份拥有与应选董事或者监事人数相同的表决权，股东拥有的表决权可以集中使用。  **第一百零六条**　股东可以委托代理人出席股东大会会议，代理人应当向公司提交股东授权委托书，并在授权范围内行使表决权。  **第一百零七条**　股东大会应当对所议事项的决定作成会议记录，主持人、出席会议的董事应当在会议记录上签名。会议记录应当与出席股东的签名册及代理出席的委托书一并保存。  **第三节　董事会、经理**  **第一百零八条**　股份有限公司设董事会，其成员为五人至十九人。  董事会成员中可以有公司职工代表。董事会中的职工代表由公司职工通过职工代表大会、职工大会或者其他形式民主选举产生。  本法第四十五条关于有限责任公司董事任期的规定，适用于股份有限公司董事。  本法第四十六条关于有限责任公司董事会职权的规定，适用于股份有限公司董事会。  **第一百零九条**　董事会设董事长一人，可以设副董事长。董事长和副董事长由董事会以全体董事的过半数选举产生。  董事长召集和主持董事会会议，检查董事会决议的实施情况。副董事长协助董事长工作，董事长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副董事长履行职务；副董事长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半数以上董事共同推举一名董事履行职务。  **第一百一十条**　董事会每年度至少召开两次会议，每次会议应当于会议召开十日前通知全体董事和监事。  代表十分之一以上表决权的股东、三分之一以上董事或者监事会，可以提议召开董事会临时会议。董事长应当自接到提议后十日内，召集和主持董事会会议。  董事会召开临时会议，可以另定召集董事会的通知方式和通知时限。  **第一百一十一条**　董事会会议应有过半数的董事出席方可举行。董事会作出决议，必须经全体董事的过半数通过。  董事会决议的表决，实行一人一票。  **第一百一十二条**　董事会会议，应由董事本人出席；董事因故不能出席，可以书面委托其他董事代为出席，委托书中应载明授权范围。  董事会应当对会议所议事项的决定作成会议记录，出席会议的董事应当在会议记录上签名。  董事应当对董事会的决议承担责任。董事会的决议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公司章程、股东大会决议，致使公司遭受严重损失的，参与决议的董事对公司负赔偿责任。但经证明在表决时曾表明异议并记载于会议记录的，该董事可以免除责任。  **第一百一十三条**　股份有限公司设经理，由董事会决定聘任或者解聘。  本法第四十九条关于有限责任公司经理职权的规定，适用于股份有限公司经理。  **第一百一十四条**　公司董事会可以决定由董事会成员兼任经理。  **第一百一十五条**　公司不得直接或者通过子公司向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提供借款。  **第一百一十六条**　公司应当定期向股东披露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从公司获得报酬的情况。  **第四节　监事会**  **第一百一十七条**　股份有限公司设监事会，其成员不得少于三人。  监事会应当包括股东代表和适当比例的公司职工代表，其中职工代表的比例不得低于三分之一，具体比例由公司章程规定。监事会中的职工代表由公司职工通过职工代表大会、职工大会或者其他形式民主选举产生。  监事会设主席一人，可以设副主席。监事会主席和副主席由全体监事过半数选举产生。监事会主席召集和主持监事会会议；监事会主席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监事会副主席召集和主持监事会会议；监事会副主席不能履行职务或者不履行职务的，由半数以上监事共同推举一名监事召集和主持监事会会议。  董事、高级管理人员不得兼任监事。  本法第五十二条关于有限责任公司监事任期的规定，适用于股份有限公司监事。  **第一百一十八条**　本法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关于有限责任公司监事会职权的规定，适用于股份有限公司监事会。  监事会行使职权所必需的费用，由公司承担。  **第一百一十九条**　监事会每六个月至少召开一次会议。监事可以提议召开临时监事会会议。  监事会的议事方式和表决程序，除本法有规定的外，由公司章程规定。  监事会决议应当经半数以上监事通过。  监事会应当对所议事项的决定作成会议记录，出席会议的监事应当在会议记录上签名。  **第五节 上市公司组织机构的特别规定**  **第一百二十条**　本法所称上市公司，是指其股票在证券交易所上市交易的股份有限公司。  **第一百二十一条**　上市公司在一年内购买、出售重大资产或者担保金额超过公司资产总额百分之三十的，应当由股东大会作出决议，并经出席会议的股东所持表决权的三分之二以上通过。  **第一百二十二条**　上市公司设独立董事，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第一百二十三条**　上市公司设董事会秘书，负责公司股东大会和董事会会议的筹备、文件保管以及公司股东资料的管理，办理信息披露事务等事宜。  **第一百二十四条**　上市公司董事与董事会会议决议事项所涉及的企业有关联关系的，不得对该项决议行使表决权，也不得代理其他董事行使表决权。该董事会会议由过半数的无关联关系董事出席即可举行，董事会会议所作决议须经无关联关系董事过半数通过。出席董事会的无关联关系董事人数不足三人的，应将该事项提交上市公司股东大会审议。  **第五章　股份有限公司的股份发行和转让**  **第一节　股份发行**  **第一百二十五条**　股份有限公司的资本划分为股份，每一股的金额相等。  公司的股份采取股票的形式。股票是公司签发的证明股东所持股份的凭证。  **第一百二十六条**　股份的发行，实行公平、公正的原则，同种类的每一股份应当具有同等权利。  同次发行的同种类股票，每股的发行条件和价格应当相同；任何单位或者个人所认购的股份，每股应当支付相同价额。  **第一百二十七条**　股票发行价格可以按票面金额，也可以超过票面金额，但不得低于票面金额。  **第一百二十八条**　股票采用纸面形式或者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形式。  股票应当载明下列主要事项：  （一）公司名称；  （二）公司成立日期；  （三）股票种类、票面金额及代表的股份数；  （四）股票的编号。  股票由法定代表人签名，公司盖章。  发起人的股票，应当标明发起人股票字样。  **第一百二十九条**　公司发行的股票，可以为记名股票，也可以为无记名股票。  公司向发起人、法人发行的股票，应当为记名股票，并应当记载该发起人、法人的名称或者姓名，不得另立户名或者以代表人姓名记名。  **第一百三十条**　公司发行记名股票的，应当置备股东名册，记载下列事项：  （一）股东的姓名或者名称及住所；  （二）各股东所持股份数；  （三）各股东所持股票的编号；  （四）各股东取得股份的日期。  发行无记名股票的，公司应当记载其股票数量、编号及发行日期。  **第一百三十一条**　国务院可以对公司发行本法规定以外的其他种类的股份，另行作出规定。  **第一百三十二条**　股份有限公司成立后，即向股东正式交付股票。公司成立前不得向股东交付股票。  **第一百三十三条**　公司发行新股，股东大会应当对下列事项作出决议：  （一）新股种类及数额；  （二）新股发行价格；  （三）新股发行的起止日期；  （四）向原有股东发行新股的种类及数额。  **第一百三十四条**　公司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核准公开发行新股时，必须公告新股招股说明书和财务会计报告，并制作认股书。  本法第八十七条、第八十八条的规定适用于公司公开发行新股。  **第一百三十五条**　公司发行新股，可以根据公司经营情况和财务状况，确定其作价方案。  **第一百三十六条**　公司发行新股募足股款后，必须向公司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并公告。  **第二节　股份转让**  **第一百三十七条**　股东持有的股份可以依法转让。  **第一百三十八条**　股东转让其股份，应当在依法设立的证券交易场所进行或者按照国务院规定的其他方式进行。  **第一百三十九条**　记名股票，由股东以背书方式或者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方式转让；转让后由公司将受让人的姓名或者名称及住所记载于股东名册。  股东大会召开前二十日内或者公司决定分配股利的基准日前五日内，不得进行前款规定的股东名册的变更登记。但是，法律对上市公司股东名册变更登记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一百四十条**　无记名股票的转让，由股东将该股票交付给受让人后即发生转让的效力。  **第一百四十一条**　发起人持有的本公司股份，自公司成立之日起一年内不得转让。公司公开发行股份前已发行的股份，自公司股票在证券交易所上市交易之日起一年内不得转让。  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应当向公司申报所持有的本公司的股份及其变动情况，在任职期间每年转让的股份不得超过其所持有本公司股份总数的百分之二十五；所持本公司股份自公司股票上市交易之日起一年内不得转让。上述人员离职后半年内，不得转让其所持有的本公司股份。公司章程可以对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转让其所持有的本公司股份作出其他限制性规定。  **第一百四十二条**　公司不得收购本公司股份。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一）减少公司注册资本；  （二）与持有本公司股份的其他公司合并；  （三）将股份用于员工持股计划或者股权激励；  （四）股东因对股东大会作出的公司合并、分立决议持异议，要求公司收购其股份；  （五）将股份用于转换上市公司发行的可转换为股票的公司债券；  （六）上市公司为维护公司价值及股东权益所必需。  公司因前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情形收购本公司股份的，应当经股东大会决议；公司因前款第（三）项、第（五）项、第（六）项规定的情形收购本公司股份的，可以依照公司章程的规定或者股东大会的授权，经三分之二以上董事出席的董事会会议决议。  公司依照本条第一款规定收购本公司股份后，属于第（一）项情形的，应当自收购之日起十日内注销；属于第（二）项、第（四）项情形的，应当在六个月内转让或者注销；属于第（三）项、第（五）项、第（六）项情形的，公司合计持有的本公司股份数不得超过本公司已发行股份总额的百分之十，并应当在三年内转让或者注销。  上市公司收购本公司股份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的规定履行信息披露义务。上市公司因本条第一款第（三）项、第（五）项、第（六）项规定的情形收购本公司股份的，应当通过公开的集中交易方式进行。  公司不得接受本公司的股票作为质押权的标的。  **第一百四十三条**　记名股票被盗、遗失或者灭失，股东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规定的公示催告程序，请求人民法院宣告该股票失效。人民法院宣告该股票失效后，股东可以向公司申请补发股票。  **第一百四十四条**　上市公司的股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及证券交易所交易规则上市交易。  **第一百四十五条**上市公司必须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公开其财务状况、经营情况及重大诉讼，在每会计年度内半年公布一次财务会计报告。  **第六章　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的资格和义务**  **第一百四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  （一）无民事行为能力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  （二）因贪污、贿赂、侵占财产、挪用财产或者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被判处刑罚，执行期满未逾五年，或者因犯罪被剥夺政治权利，执行期满未逾五年；  （三）担任破产清算的公司、企业的董事或者厂长、经理，对该公司、企业的破产负有个人责任的，自该公司、企业破产清算完结之日起未逾三年；  （四）担任因违法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的公司、企业的法定代表人，并负有个人责任的，自该公司、企业被吊销营业执照之日起未逾三年；  （五）个人所负数额较大的债务到期未清偿。  公司违反前款规定选举、委派董事、监事或者聘任高级管理人员的，该选举、委派或者聘任无效。  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在任职期间出现本条第一款所列情形的，公司应当解除其职务。  **第一百四十七条**　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公司章程，对公司负有忠实义务和勤勉义务。  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不得利用职权收受贿赂或者其他非法收入，不得侵占公司的财产。  **第一百四十八条**　董事、高级管理人员不得有下列行为：  （一）挪用公司资金；  （二）将公司资金以其个人名义或者以其他个人名义开立账户存储；  （三）违反公司章程的规定，未经股东会、股东大会或者董事会同意，将公司资金借贷给他人或者以公司财产为他人提供担保；  （四）违反公司章程的规定或者未经股东会、股东大会同意，与本公司订立合同或者进行交易；  （五）未经股东会或者股东大会同意，利用职务便利为自己或者他人谋取属于公司的商业机会，自营或者为他人经营与所任职公司同类的业务；  （六）接受他人与公司交易的佣金归为己有；  （七）擅自披露公司秘密；  （八）违反对公司忠实义务的其他行为。  董事、高级管理人员违反前款规定所得的收入应当归公司所有。  **第一百四十九条**　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执行公司职务时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公司章程的规定，给公司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一百五十条**　股东会或者股东大会要求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列席会议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应当列席并接受股东的质询。  董事、高级管理人员应当如实向监事会或者不设监事会的有限责任公司的监事提供有关情况和资料，不得妨碍监事会或者监事行使职权。  **第一百五十一条**　董事、高级管理人员有本法第一百四十九条规定的情形的，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连续一百八十日以上单独或者合计持有公司百分之一以上股份的股东，可以书面请求监事会或者不设监事会的有限责任公司的监事向人民法院提起诉讼；监事有本法第一百四十九条规定的情形的，前述股东可以书面请求董事会或者不设董事会的有限责任公司的执行董事向人民法院提起诉讼。  监事会、不设监事会的有限责任公司的监事，或者董事会、执行董事收到前款规定的股东书面请求后拒绝提起诉讼，或者自收到请求之日起三十日内未提起诉讼，或者情况紧急、不立即提起诉讼将会使公司利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前款规定的股东有权为了公司的利益以自己的名义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他人侵犯公司合法权益，给公司造成损失的，本条第一款规定的股东可以依照前两款的规定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一百五十二条**　董事、高级管理人员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公司章程的规定，损害股东利益的，股东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七章　公司债券**  **第一百五十三条**　本法所称公司债券，是指公司依照法定程序发行、约定在一定期限还本付息的有价证券。  公司发行公司债券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规定的发行条件。  **第一百五十四条**　发行公司债券的申请经国务院授权的部门核准后，应当公告公司债券募集办法。  公司债券募集办法中应当载明下列主要事项：  （一）公司名称；  （二）债券募集资金的用途；  （三）债券总额和债券的票面金额；  （四）债券利率的确定方式；  （五）还本付息的期限和方式；  （六）债券担保情况；  （七）债券的发行价格、发行的起止日期；  （八）公司净资产额；  （九）已发行的尚未到期的公司债券总额；  （十）公司债券的承销机构。  **第一百五十五条**　公司以实物券方式发行公司债券的，必须在债券上载明公司名称、债券票面金额、利率、偿还期限等事项，并由法定代表人签名，公司盖章。  **第一百五十六条**　公司债券，可以为记名债券，也可以为无记名债券。  **第一百五十七条**　公司发行公司债券应当置备公司债券存根簿。  发行记名公司债券的，应当在公司债券存根簿上载明下列事项：  （一）债券持有人的姓名或者名称及住所；  （二）债券持有人取得债券的日期及债券的编号；  （三）债券总额，债券的票面金额、利率、还本付息的期限和方式；  （四）债券的发行日期。  发行无记名公司债券的，应当在公司债券存根簿上载明债券总额、利率、偿还期限和方式、发行日期及债券的编号。  **第一百五十八条**　记名公司债券的登记结算机构应当建立债券登记、存管、付息、兑付等相关制度。  **第一百五十九条**　公司债券可以转让，转让价格由转让人与受让人约定。  公司债券在证券交易所上市交易的，按照证券交易所的交易规则转让。  **第一百六十条**　记名公司债券，由债券持有人以背书方式或者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方式转让；转让后由公司将受让人的姓名或者名称及住所记载于公司债券存根簿。  无记名公司债券的转让，由债券持有人将该债券交付给受让人后即发生转让的效力。  **第一百六十一条**　上市公司经股东大会决议可以发行可转换为股票的公司债券，并在公司债券募集办法中规定具体的转换办法。上市公司发行可转换为股票的公司债券，应当报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核准。  发行可转换为股票的公司债券，应当在债券上标明可转换公司债券字样，并在公司债券存根簿上载明可转换公司债券的数额。  **第一百六十二条**发行可转换为股票的公司债券的，公司应当按照其转换办法向债券持有人换发股票，但债券持有人对转换股票或者不转换股票有选择权。  **第八章　公司财务、会计**  **第一百六十三条**　公司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财政部门的规定建立本公司的财务、会计制度。  **第一百六十四条**　公司应当在每一会计年度终了时编制财务会计报告，并依法经会计师事务所审计。  财务会计报告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财政部门的规定制作。  **第一百六十五条**　有限责任公司应当依照公司章程规定的期限将财务会计报告送交各股东。  股份有限公司的财务会计报告应当在召开股东大会年会的二十日前置备于本公司，供股东查阅；公开发行股票的股份有限公司必须公告其财务会计报告。  **第一百六十六条**　公司分配当年税后利润时，应当提取利润的百分之十列入公司法定公积金。公司法定公积金累计额为公司注册资本的百分之五十以上的，可以不再提取。  公司的法定公积金不足以弥补以前年度亏损的，在依照前款规定提取法定公积金之前，应当先用当年利润弥补亏损。  公司从税后利润中提取法定公积金后，经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还可以从税后利润中提取任意公积金。  公司弥补亏损和提取公积金后所余税后利润，有限责任公司依照本法第三十四条的规定分配；股份有限公司按照股东持有的股份比例分配，但股份有限公司章程规定不按持股比例分配的除外。  股东会、股东大会或者董事会违反前款规定，在公司弥补亏损和提取法定公积金之前向股东分配利润的，股东必须将违反规定分配的利润退还公司。  公司持有的本公司股份不得分配利润。  **第一百六十七条**　股份有限公司以超过股票票面金额的发行价格发行股份所得的溢价款以及国务院财政部门规定列入资本公积金的其他收入，应当列为公司资本公积金。  **第一百六十八条**　公司的公积金用于弥补公司的亏损、扩大公司生产经营或者转为增加公司资本。但是，资本公积金不得用于弥补公司的亏损。  法定公积金转为资本时，所留存的该项公积金不得少于转增前公司注册资本的百分之二十五。  **第一百六十九条**　公司聘用、解聘承办公司审计业务的会计师事务所，依照公司章程的规定，由股东会、股东大会或者董事会决定。  公司股东会、股东大会或者董事会就解聘会计师事务所进行表决时，应当允许会计师事务所陈述意见。  **第一百七十条**　公司应当向聘用的会计师事务所提供真实、完整的会计凭证、会计账簿、财务会计报告及其他会计资料，不得拒绝、隐匿、谎报。  **第一百七十一条**　公司除法定的会计账簿外，不得另立会计账簿。  对公司资产，不得以任何个人名义开立账户存储。  **第九章　公司合并、分立、增资、减资**  **第一百七十二条**　公司合并可以采取吸收合并或者新设合并。  一个公司吸收其他公司为吸收合并，被吸收的公司解散。两个以上公司合并设立一个新的公司为新设合并，合并各方解散。  **第一百七十三条**　公司合并，应当由合并各方签订合并协议，并编制资产负债表及财产清单。公司应当自作出合并决议之日起十日内通知债权人，并于三十日内在报纸上公告。债权人自接到通知书之日起三十日内，未接到通知书的自公告之日起四十五日内，可以要求公司清偿债务或者提供相应的担保。  **第一百七十四条**　公司合并时，合并各方的债权、债务，应当由合并后存续的公司或者新设的公司承继。  **第一百七十五条**　公司分立，其财产作相应的分割。  公司分立，应当编制资产负债表及财产清单。公司应当自作出分立决议之日起十日内通知债权人，并于三十日内在报纸上公告。  **第一百七十六条**　公司分立前的债务由分立后的公司承担连带责任。但是，公司在分立前与债权人就债务清偿达成的书面协议另有约定的除外。  **第一百七十七条**　公司需要减少注册资本时，必须编制资产负债表及财产清单。  公司应当自作出减少注册资本决议之日起十日内通知债权人，并于三十日内在报纸上公告。债权人自接到通知书之日起三十日内，未接到通知书的自公告之日起四十五日内，有权要求公司清偿债务或者提供相应的担保。  **第一百七十八条**　有限责任公司增加注册资本时，股东认缴新增资本的出资，依照本法设立有限责任公司缴纳出资的有关规定执行。  股份有限公司为增加注册资本发行新股时，股东认购新股，依照本法设立股份有限公司缴纳股款的有关规定执行。  **第一百七十九条**　公司合并或者分立，登记事项发生变更的，应当依法向公司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公司解散的，应当依法办理公司注销登记；设立新公司的，应当依法办理公司设立登记。  公司增加或者减少注册资本，应当依法向公司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  **第十章　公司解散和清算**  **第一百八十条**　公司因下列原因解散：  （一）公司章程规定的营业期限届满或者公司章程规定的其他解散事由出现；  （二）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解散；  （三）因公司合并或者分立需要解散；  （四）依法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或者被撤销；  （五）人民法院依照本法第一百八十二条的规定予以解散。  **第一百八十一条**　公司有本法第一百八十条第（一）项情形的，可以通过修改公司章程而存续。  依照前款规定修改公司章程，有限责任公司须经持有三分之二以上表决权的股东通过，股份有限公司须经出席股东大会会议的股东所持表决权的三分之二以上通过。  **第一百八十二条**　公司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继续存续会使股东利益受到重大损失，通过其他途径不能解决的，持有公司全部股东表决权百分之十以上的股东，可以请求人民法院解散公司。  **第一百八十三条**　公司因本法第一百八十条第（一）项、第（二）项、第（四）项、第（五）项规定而解散的，应当在解散事由出现之日起十五日内成立清算组，开始清算。有限责任公司的清算组由股东组成，股份有限公司的清算组由董事或者股东大会确定的人员组成。逾期不成立清算组进行清算的，债权人可以申请人民法院指定有关人员组成清算组进行清算。人民法院应当受理该申请，并及时组织清算组进行清算。  **第一百八十四条**　清算组在清算期间行使下列职权：  （一）清理公司财产，分别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  （二）通知、公告债权人；  （三）处理与清算有关的公司未了结的业务；  （四）清缴所欠税款以及清算过程中产生的税款；  （五）清理债权、债务；  （六）处理公司清偿债务后的剩余财产；  （七）代表公司参与民事诉讼活动。  **第一百八十五条**　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十日内通知债权人，并于六十日内在报纸上公告。债权人应当自接到通知书之日起三十日内，未接到通知书的自公告之日起四十五日内，向清算组申报其债权。  债权人申报债权，应当说明债权的有关事项，并提供证明材料。清算组应当对债权进行登记。  在申报债权期间，清算组不得对债权人进行清偿。  **第一百八十六条**　清算组在清理公司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后，应当制定清算方案，并报股东会、股东大会或者人民法院确认。  公司财产在分别支付清算费用、职工的工资、社会保险费用和法定补偿金，缴纳所欠税款，清偿公司债务后的剩余财产，有限责任公司按照股东的出资比例分配，股份有限公司按照股东持有的股份比例分配。  清算期间，公司存续，但不得开展与清算无关的经营活动。公司财产在未依照前款规定清偿前，不得分配给股东。  **第一百八十七条**　清算组在清理公司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后，发现公司财产不足清偿债务的，应当依法向人民法院申请宣告破产。  公司经人民法院裁定宣告破产后，清算组应当将清算事务移交给人民法院。  **第一百八十八条**　公司清算结束后，清算组应当制作清算报告，报股东会、股东大会或者人民法院确认，并报送公司登记机关，申请注销公司登记，公告公司终止。  **第一百八十九条**　清算组成员应当忠于职守，依法履行清算义务。  清算组成员不得利用职权收受贿赂或者其他非法收入，不得侵占公司财产。  清算组成员因故意或者重大过失给公司或者债权人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一百九十条**　公司被依法宣告破产的，依照有关企业破产的法律实施破产清算。  **第十一章　外国公司的分支机构**  **第一百九十一条**　本法所称外国公司是指依照外国法律在中国境外设立的公司。  **第一百九十二条**　外国公司在中国境内设立分支机构，必须向中国主管机关提出申请，并提交其公司章程、所属国的公司登记证书等有关文件，经批准后，向公司登记机关依法办理登记，领取营业执照。  外国公司分支机构的审批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第一百九十三条**　外国公司在中国境内设立分支机构，必须在中国境内指定负责该分支机构的代表人或者代理人，并向该分支机构拨付与其所从事的经营活动相适应的资金。  对外国公司分支机构的经营资金需要规定最低限额的，由国务院另行规定。  **第一百九十四条**　外国公司的分支机构应当在其名称中标明该外国公司的国籍及责任形式。  外国公司的分支机构应当在本机构中置备该外国公司章程。  **第一百九十五条**　外国公司在中国境内设立的分支机构不具有中国法人资格。  外国公司对其分支机构在中国境内进行经营活动承担民事责任。  **第一百九十六条**　经批准设立的外国公司分支机构，在中国境内从事业务活动，必须遵守中国的法律，不得损害中国的社会公共利益，其合法权益受中国法律保护。  **第一百九十七条**　外国公司撤销其在中国境内的分支机构时，必须依法清偿债务，依照本法有关公司清算程序的规定进行清算。未清偿债务之前，不得将其分支机构的财产移至中国境外。  **第十二章　法律责任**  **第一百九十八条**　违反本法规定，虚报注册资本、提交虚假材料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重要事实取得公司登记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对虚报注册资本的公司，处以虚报注册资本金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十五以下的罚款；对提交虚假材料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重要事实的公司，处以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公司登记或者吊销营业执照。  **第一百九十九条**　公司的发起人、股东虚假出资，未交付或者未按期交付作为出资的货币或者非货币财产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处以虚假出资金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十五以下的罚款。  **第二百条**　公司的发起人、股东在公司成立后，抽逃其出资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处以所抽逃出资金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十五以下的罚款。  **第二百零一条**　公司违反本法规定，在法定的会计账簿以外另立会计账簿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责令改正，处以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百零二条**　公司在依法向有关主管部门提供的财务会计报告等材料上作虚假记载或者隐瞒重要事实的，由有关主管部门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百零三条**　公司不依照本法规定提取法定公积金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责令如数补足应当提取的金额，可以对公司处以二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百零四条**　公司在合并、分立、减少注册资本或者进行清算时，不依照本法规定通知或者公告债权人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对公司处以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公司在进行清算时，隐匿财产，对资产负债表或者财产清单作虚假记载或者在未清偿债务前分配公司财产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对公司处以隐匿财产或者未清偿债务前分配公司财产金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十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百零五条**　公司在清算期间开展与清算无关的经营活动的，由公司登记机关予以警告，没收违法所得。  **第二百零六条**　清算组不依照本法规定向公司登记机关报送清算报告，或者报送清算报告隐瞒重要事实或者有重大遗漏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  清算组成员利用职权徇私舞弊、谋取非法收入或者侵占公司财产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退还公司财产，没收违法所得，并可以处以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  **第二百零七条**　承担资产评估、验资或者验证的机构提供虚假材料的，由公司登记机关没收违法所得，处以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并可以由有关主管部门依法责令该机构停业、吊销直接责任人员的资格证书，吊销营业执照。  承担资产评估、验资或者验证的机构因过失提供有重大遗漏的报告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情节较重的，处以所得收入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并可以由有关主管部门依法责令该机构停业、吊销直接责任人员的资格证书，吊销营业执照。  承担资产评估、验资或者验证的机构因其出具的评估结果、验资或者验证证明不实，给公司债权人造成损失的，除能够证明自己没有过错的外，在其评估或者证明不实的金额范围内承担赔偿责任。  **第二百零八条**　公司登记机关对不符合本法规定条件的登记申请予以登记，或者对符合本法规定条件的登记申请不予登记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二百零九条**　公司登记机关的上级部门强令公司登记机关对不符合本法规定条件的登记申请予以登记，或者对符合本法规定条件的登记申请不予登记的，或者对违法登记进行包庇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二百一十条**　未依法登记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而冒用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名义的，或者未依法登记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的分公司，而冒用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的分公司名义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或者予以取缔，可以并处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百一十一条**　公司成立后无正当理由超过六个月未开业的，或者开业后自行停业连续六个月以上的，可以由公司登记机关吊销营业执照。  公司登记事项发生变更时，未依照本法规定办理有关变更登记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限期登记；逾期不登记的，处以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百一十二条**　外国公司违反本法规定，擅自在中国境内设立分支机构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或者关闭，可以并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百一十三条**　利用公司名义从事危害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的严重违法行为的，吊销营业执照。  **第二百一十四条**　公司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赔偿责任和缴纳罚款、罚金的，其财产不足以支付时，先承担民事赔偿责任。  **第二百一十五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三章　附　则**  **第二百一十六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一）高级管理人员，是指公司的经理、副经理、财务负责人，上市公司董事会秘书和公司章程规定的其他人员。  （二）控股股东，是指其出资额占有限责任公司资本总额百分之五十以上或者其持有的股份占股份有限公司股本总额百分之五十以上的股东；出资额或者持有股份的比例虽然不足百分之五十，但依其出资额或者持有的股份所享有的表决权已足以对股东会、股东大会的决议产生重大影响的股东。  （三）实际控制人，是指虽不是公司的股东，但通过投资关系、协议或者其他安排，能够实际支配公司行为的人。  （四）关联关系，是指公司控股股东、实际控制人、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与其直接或者间接控制的企业之间的关系，以及可能导致公司利益转移的其他关系。但是，国家控股的企业之间不仅因为同受国家控股而具有关联关系。  **第二百一十七条**　外商投资的有限责任公司和股份有限公司适用本法；有关外商投资的法律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第二百一十八条**　本法自2006年1月1日起施行。 |